

의안번호	2220021
의 퇴 인	이주영의원
회 답 일	2026. 8. 20.
추 계 번호	26C3579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10조의7 (취약임산부에 대한 지원) 신설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그 자녀인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. 취약임산부 조기발굴 및 지속관리를 위한 상담 및 관리체계 구축 2.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 3. 장애·빈곤·국적·지역 등 신체적·사회적·경제적 취약요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지원 4. 그 밖에 취약임산부의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※ “취약임산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함 (안 제2조제13호) 가. 장애인인 임산부 나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임산부 다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또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임산부 라.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 마. 그 밖에 건강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의7 (취약임산부에 대한 지원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임산부 조기발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·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임산부에 대한 출산비용, 산후관리,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

[표 1] 현행 주요 취약임산부 지원 사업

사업명	대상자
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	등록 여성장애인 중 2026년도 1월 1일 이후, 출산 또는 유산, 사산(임신기간 16주 이상)한 경우 출산비용 목적으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*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,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급 가능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	취약계층*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(유방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원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, 단태아 5~20일, 쌍태아 10~20일, 삼태아 이상 15~40일 지원) * 산모 또는 배우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,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의료급여 임신·출산진료비 지원	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(유산 및 사산 포함)한 수급권자에게 태아당 임신·출산 진료비 100만원을 지원
해산급여	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(출산예정 포함) 자녀 1인당 70만원 지원
청소년산모 임신·출산 의료비 지원사업	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산모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
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	19대 고위험 임신질환*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에게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%를 지원(1인당 300만원 한도,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) * 조기진통, 분만관련 출혈, 중증 임신중독증, 양막의 조기파열, 태반조기박리, 전치태반, 절박유산, 양수과다증, 양수과소증, 분만전 출혈, 자궁경부무력증, 고혈압, 다태임신, 당뇨병, 대사장해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, 신질환, 심부전, 저체중 내성장 제한,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
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	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, 보호출산 산모,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 등에게 ▲ 24시간 상담 서비스, ▲ 긴급상황 시 방문지원 서비스, ▲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(임신지원, 출산지원, 양육지원 연계 등), ▲ 보호출산 산모 지원(1명당 1백만원의 의료비 지원, 1일 20만원씩 총 7일의 숙려기간 지원), ▲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(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)

자료: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(<https://www.bokjiro.go.kr/>) 누리집을 참고하여 제작됨
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확대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임산부에 대한 지원의 내용과 그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한계가 있음
 - 안 제2조제13호는 취약임산부의 범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산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취약임산부의 구체적인 범위와 대상자 수를 알 수 없음
 - 안 제10조의7은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취약임산부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재정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문지은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